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2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, 2023. 10. 2.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21. 9. 1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,000만 원, 임료 월 100만 원,

부가세 별도, 임대기간 2023. 10. 1.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.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병률

별지